

[별지 제7호 서식]

## 공 장 심 사 보 고 서

( 최초심사 정기심사 갱신심사)

1. 공장심사 현황

공 장(회사) 명				대 표 자							
소 재 지				전 화							
				E-mail							
신 청 품 목 (규 격 번 호)				모 델 명							
사업자등록번호		신청일자		심사기간							
심사결과 요약											
심사결과	심 사 사 항	심 사 항목수	배 점	평 가 내 역						총 평 점	판 정
				상	중상	중	중하	하	점수		
	품질경영	6	31								
	자재의 관리	2	10								
	공정관리	3	15								
	제품의 품질관리	3	20								
	제조설비의 관리	3	12								
	검사설비의 관리	3	12								
계	20	100	0	0	0	0	0	0			

- 주: 1. 심사사항 및 평가구분상의 항목에 대하여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.  
 2. 점수 부여 방법은 표준(규정, 문서, 기록, 데이터)의 유무 및 실행(구축) 수준 등을 기준한다.  
 3. 해당하는 평가항목에 대한 평점이 100%(만점)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자의 의견을 첨부한다.  
 4. 평점은 각 평가항목의 평가점수를, 총평점은 각 평가항목의 평가점수를 합계한 점수를 기입한다.  
 5. 평가결과 총평점 7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처리한다.

위와 같이 공장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.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인증심사원    성명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인)

인증심사원    성명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인)

인증업체명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대 표 자    성명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인)

2. 공장의 일반현황

o 종업원 현황

총인원(합계)	사무직	기술직	생산직

o 공통 생산현황

총 자본금	백만원	매출액 (연)	백만원
경 상 이 익 (연)	백만원	연구 개발비(연)	백만원
수출	국가		
	실적(연)	백만원	백만원
기타 생산품			
기타 인증 수	의무 ( )개	원자재의 제품 원가비율	%
	임의 ( )개		
원자재 공급업체의 독과점 상태	상 ( ), 중 ( ), 하 ( ) (해당란에 o표 하시오)		
소 요 원 자 재			
회 사 의 연 령	* * * *		
특 기 사 항	o 공장심사 참관자		
	성 명	직 급	부 서
	o 기술지도 현황:		
기 타 사 항			

3. 시료채취 현황

표준번호	품 목	모델명	재고량	시료크기	시료수 (로트번호)	시험방법 및 시험항목

- 샘플링(시료 채취) 방식 :

- 시험 의뢰처 :

위와 같이 시료채취 및 시험 의뢰하였음.

20 년 월 일

인증심사원

입 회 자

심 사 원

(인) 대 표 자

(인)

심 사 원

(인) 품질관리담당자

(인)

4. 최근 3개월(12개월)간 검사 평균 DATA 현황

품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목 :  
 모        델        명 :  
 기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간 :  
 검 사    항        목 :

구분	빈도수	평균값 (A)	기준값	현 장 시험값	오차 (B)	오차율(%) (B/A×100)		
20 년				$x_1 =$				
				$x_2 =$				
				$x_3 =$				
20 년				$\bar{x} =$				
				(평균)				
평균	X	0.00						

상기와 같이 이상 없음을 확인함.

20    년        월        일

인증심사원

입 회 자

심 사 원

(인) 대 표 자

(인)

심 사 원

(인) 품질관리담당자

(인)

5. 제조(가공) 설비(표준번호 및 표준명) 보유현황

NO	보유설비명	보유대수	용량/능력	제작사	설치년월	비 고
1						
2						
3						
4						
5						
6						
7						
8						
9						
10						

위와 같이 제조(가공) 설비의 보유현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인증심사원

입 회 자

심사원

(인) 대 표 자

(인)

심사원

(인) 품질관리담당자

(인)

6. 시험(검사) 설비(표준번호 및 표준명) 보유현황

NO	보유설비명	보유 대수	용량/능력	제작사	설치 년월	교정일자	비 고
						교정기관	
1							
2							
3							
4							
5							
6							
7							
8							
9							
10							

위와 같이 시험(검사) 설비의 보유현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인증심사원

입 회 자

심사원

(인) 대 표 자

(인)

심사원

(인) 품질관리담당자

(인)

7. 공장심사 부적합 요약서

공 장(회사) 명		소 재 지	
신 청 품 목 (모 텔 명)		신청일자	- 심사기간

심 사 사 항	평가항목	평 점	부 적 합 사 항
I . 품질경영	(1)		
	(2)		
	(4)		
	(5)		
	(6)		
II . 자재관리	(2)		
III . 공정관리	(1)		
	(2)		
	(3)		
IV . 제품의 품질관리	(2)		
	(3)		
V . 제조설비의 관리	(1)		
	(2)		
VI . 검사설비의 관리	(3)		
총 평 점			

위와 같이 공장심사 부적합 사항을 요약하여 제출합니다.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인증심사원

입 회 자

심사원

(인) 대 표 자

(인)

심사원

(인) 품질관리담당자

(인)



구분	심사항목	세 부 심 사 내 용	배점	비고
		<p>(3)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연간 교육 훈련 계획이 계층별, 분야별로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고, 이에 따라 경영책임자(실질적인 경영책임자를 말한다) 및 경영간부(최소 단위 부서장)가 표준화 및 품질경영 관련 교육을 받았으며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적절하게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</p> <p>상. 사내표준에 따라 계층별, 분야별로 연간 교육계획을 적절하게 수립·관리하고 있고, 경영책임자가 표준화 및 품질경영 관련 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받았으며, 경영간부의 50% 이상이 표준화 및 품질경영 관련 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받고, 종업원에 대한 사·내외 교육훈련을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는 경우</p> <p>중상. 사내표준에 따라 계층별, 분야별로 연간 교육계획을 적절하게 수립·관리하고 있고, 경영책임자가 표준화 및 품질경영 관련 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받았으며, 경영간부의 30% 이상이 표준화 및 품질경영 관련 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받고, 종업원에 대한 사·내외 교육훈련을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는 경우</p> <p>중. 사내표준에 따라 계층별, 분야별로 연간 교육계획을 적절하게 수립·관리하고 있고, 경영책임자가 표준화 및 품질경영 관련 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받았으며, 경영간부의 30% 이상이 표준화 및 품질경영 관련 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받고, 종업원에 대한 사·내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시상태가 일부 미흡한 경우</p> <p>중하. 경영책임자가 표준화 및 품질경영 관련 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받았으며 사내표준에 따라 계층별, 분야별로 연간 교육계획을 적절하게 수립·관리가 미흡하고, 종업원에 대한 사·내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시상태가 미흡한 경우</p> <p>하. "중하"에 미흡한 경우</p>	<p>6</p> <p>4.5</p> <p>3</p> <p>1.5</p> <p>0</p>	
		<p>(4) 업종 및 규모에 적합하게 표준화 및 품질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담당자를 지정·운영하고 있으며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</p> <p>상. 재직경력 12월 이상 되는 품질관리담당자가 독립적이며 적절하게 표준화 및 품질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, 담당자의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한 경우</p> <p>중상. 재직경력 9월 이상 되는 품질관리담당자가 독립적이며 적절하게 표준화 및 품질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, 담당자의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한 경우</p> <p>중. 재직경력 6월 이상 되는 품질관리담당자가 독립적이며 적절하게 표준화 및 품질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, 담당자의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한 경우</p> <p>중하. 재직경력 3개월 이상 되는 품질관리담당자가 독립적이며 적절하게 표준화 및 품질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직무수행 결과가 일부 미흡한 경우</p>	<p>7</p> <p>5</p> <p>3.5</p> <p>2</p>	

구분	심사항목	세 부 심 사 내 용	배점	비고
		<p>(5) 소비자불만 처리 및 피해보상제도 등 재발방지를 위한 처리절차 및 책임 규정을 KS Q ISO 10002(품질경영.고객만족,조직의 불만처리에 대한 지침)을 토대로 사내표준에 규정되어 있으며 불만내용 등의 원인분석 및 조치를 하고 있는가</p> <p>상. 소비자불만 및 피해보상 등의 처리를 위한 접수부터 조치까지의 처리절차와 책임에 대한 규정을 KS Q ISO 10002(품질경영.고객만족,조직의 불만처리에 대한 지침) 토대로 회사 규모나 실정에 맞도록 규정되어 있고 불만내용 등의 로트를 추적하여 단계별로 원인분석을 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, 계획 및 규정에 의거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적정하게 변상·교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</p> <p>중. 소비자불만 및 피해보상 등의 처리를 위한 절차 및 책임이 규정되어 있으나, 그 내용이 KS Q ISO 10002(품질경영.고객만족,조직의 불만처리에 대한 지침)에 규정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불만내용 등의 단계별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변상·교환 등 조치에 대한 실시사항이 일부 미흡한 경우</p> <p>하. "중"에 미흡한 경우</p>	<p>4</p> <p>2</p> <p>0</p>	
		<p>(6) 친환경적인 경영을 하고 있으며, 작업능률의 향상과 안전관리 및 종업원의 복지를 고려한 작업환경 유지를 위하여 사내표준에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전사적,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</p> <p>상. 친환경 경영, 작업환경 개선, 청정활동(청소, 정리, 정돈 등) 및 종업원 안전·복지를 위하여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고, 이를 전사적·지속적으로 관리·개선하고 실시하고 있는 경우</p> <p>중. 친환경 경영, 작업환경 개선, 청정활동(청소, 정리, 정돈 등) 및 종업원 안전·복지를 위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전사적·지속적인 활동 및 개선이 일부 미흡한 경우</p> <p>하. "중"에 미흡한 경우</p>	<p>4</p> <p>2</p> <p>0</p>	
2. 자재 관리		<p>(1) 자재 규격 등 자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품 표준(규격)에 근거한 자재별로 회사 실정에 적합하게 규정하고 있는가</p> <p>상. 자재의 품질항목 및 품질기준이 제품 표준(규격)에서 정한 사항을 만족하고 회사 실정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</p> <p>중. 규정된 내용은 제품 표준(규격)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하나 회사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</p> <p>하. "중"에 미흡한 경우</p>	<p>4</p> <p>2</p> <p>0</p>	

구분	심사항목	세 부 심 사 내 용	배점	비고
		<p>(2) 사용 자재에 대하여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검사방법에 따라 합리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자재의 운반 및 보관은 자재별로 회사 실정 및 자재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있는가</p> <p>상. 제품 표준(규격)에 부합하는 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, 각 자재별 검사방법(주1)과 자재 운반, 보관방법 등이 회사 실정 및 자재의 특성에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고, 규정에 따른 검사 실시 및 자재 운반·보관도 양호하며 검사결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제품의 설계, 생산 등 제품의 품질유지에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경우</p> <p>* 로트의 구성방법, 샘플링 검사방법 및 조건, 시료채취방법, 각 심사항목별 시험방법, 로트 및 시료의 합부 판정기준, 판정방법, 합격 및 불합격 로트의 처리방법, 검사결과의 기록 보관 및 활용방법 등</p> <p>중상. “상”의 규정에 적합하나 검사결과의 활용이 일부 미흡한 경우</p> <p>중. “상”의 규정에 적합하나 자재운반·검사·보관 및 검사결과의 활용이 일부 미흡한 경우</p> <p>중하. “상”의 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나, 각 자재별 검사규정이 일부 비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자재운반·검사·보관 및 검사결과의 활용이 미흡한 경우</p> <p>하. “중하”에 미흡한 경우</p>	<p>6</p> <p>4.5</p> <p>3</p> <p>1.5</p> <p>0</p>	
	3. 공정 관리	<p>(1) 공정별 관리규정을 해당표준과 회사실정에 적합하도록 설정(의주 공정관리가 있는 경우 외주 관리 포함) 하여 실시하고 있는가</p> <p>상. 각 공정별 관리규정 (공정별 관리항목에 대한 관리방법, 관리주기, 관리기준, 관리결과의 해석, 관리데이터의 활용방법 등)을 해당표준을 활용하여 회사실정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이에 따라 공정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</p> <p>* 공정을 외주하여 보유하지 않은 제조설비가 있는 경우, 업체선정기준, 관리방법을 규정한 사내표준 보유 및 준수 여부 (보유: 소유 또는 배타적 사용이보장된 입차)</p> <p>중상. 각 공정별 관리규정을 해당표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규정이 회사실정에 적합하나, 그 실시 내용이 일부 미흡한 경우</p> <p>중. 각 공정별 관리규정이 해당표준에 적합하나, 회사실정에 일부 부적합하고 그 실시 내용도 일부 미흡한 경우</p> <p>중하. 각 공정별 관리규정이 해당표준에 적합하나, 회사실정에 부적합하고 그 실시 내용도 미흡한 경우</p>	<p>5</p> <p>4</p> <p>2.5</p> <p>1</p>	

구분	심사항목	세 부 심 사 내 용	배점	비고
		<p>(2) 공정별 작업표준을 규정하고 작업현장에 비치. 게시되어 있고 작업자가 작업표준을 이해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부적합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</p> <p>상. 공정별 작업표준(작업내용, 작업방법, 이상발생시 조치사항, 작업 교대 시 인수인계 사항 등)을 작업현장에 비치. 게시하여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, 각 공정별로 품질 검증이 될 때까지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지 않는 체제로 운용하며, 부적합품에 대하여 식별 관리하고 있는 경우 *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을 할 경우, 작업표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, 그림 등 활용</p> <p>중상. 공정별로 작업표준이 규정되어 있고 작업표준을 작업현장에 비치. 게시하여 작업표준대로 실시하고 있으며 부적합품의 식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작업표준의 이해 또는 게시상태가 일부 미흡한 경우</p> <p>중. 공정별로 작업표준이 규정되어 있고 작업표준을 작업현장에 비치. 게시하여 작업표준대로 실시하고 있으나 부적합품의 식별 관리가 일부 미흡하고 작업표준의 이해 또는 게시상태가 일부 미흡한 경우</p> <p>중하. 작업표준과 실제 작업이 일치되지 않거나 작업표준의 이해 및 비치. 게시 상태가 미흡하고, 부적합품이 차기 공정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</p> <p>하. “중하”에 미흡한 경우</p>	<p>5</p> <p>4</p> <p>2.5</p> <p>1</p> <p>0</p>	
		<p>(3) 공정별 중간검사규정을 정하고 있고 중간검사자가 제규정 등을 숙지하여 규정대로 실시·관리하고 있는가</p> <p>상. 공정별 중간검사규정이 중간검사규정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중간검사자가 제규정(중간검사방법, 작업표준 등)에서 정한 내용(검사주기, 기준 등)을 이해하여 중간검사를 합리적으로 실시·관리하고 있는 경우 * 주요공정을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공정능력지수를 파악하고, 공정 및 제품 품질관리에 활용</p> <p>중상. 공정별 중간검사규정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중간검사자가 제규정에 따라 공정별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규정의 이해상태 또는 기록관리가 일부 미흡한 경우</p> <p>중. 공정별 중간검사규정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있으며, 중간검사자가 제 규정에 따라 공정별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규정의 숙지상태 및 기록관리가 일부 미흡한 경우</p> <p>중하. 공정별 중간검사규정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있으나, 중간검사자의 제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실시상태가 미흡하며, 규정의 이해상태 및 기록관리도 미흡한 경우</p>	<p>5</p> <p>4</p> <p>2.5</p> <p>1</p>	



구분	심사항목	세 부 심 사 내 용	배점	비고
		<p>(3) 제품 검사자가 제품의 품질 및 시험검사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있으며 제품 표준(규격), 사내표준에 따라 시험·검사할 수 있고 그 결과가 표준의 각 항목을 만족하고 있는가</p> <p>상. 제품 검사자가 제품의 품질 및 시험검사 관련 규정(제품 표준(규격) 및 사내표준, 검사방법, 합·부 식별 방법 등)을 숙지하고 있고 숙련된 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,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고, 그 결과가 표준을 만족시키면서 각 시험 항목 중 중요 품질특성이 최근 12개월(다만, 인증심사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) 평균값과 비교하여 불 때 ±5%의 허용값 한계 내에 있는 경우</p> <p>중상. 제품 검사자가 제품의 품질 및 시험검사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시험기기 조작과 시험을 할 수 있으며, 그 결과가 제품 표준(규격)을 만족하고 각 시험 항목별 최근 12개월(다만, 인증심사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) 평균값과 비교하여 불 때 ±5%의 허용값 한계 내에 있으나 제품 검사자의 숙련이 일부 미흡한 경우</p> <p>중. 제품 검사자가 제품의 품질 및 시험검사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시험기기 조작과 시험이 숙련되어 있으나, "창"의 시험결과가 ±5%의 허용한계를 초과하는 경우.</p> <p>중하. 제품 검사자가 제품의 품질 및 시험검사 관련규정을 이해하고 시험기기 조작과 시험을 할 수 있으나 숙련이 일부 미흡하고, "창"의 시험결과가 ±5%의 허용한계를 초과하는 경우</p> <p>하. "중하"에 미흡한 경우</p>	<p>8</p> <p>6</p> <p>4</p> <p>2</p> <p>0</p>	
	5. 제조설비 관리	<p>(1) 내진인증제품 생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운전 안전 수칙(운전 시 유의사항, 인수인계사항, 주요 확인사항 등)을 정하여 일상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가</p> <p>상. 내진인증제품 생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운전 안전 수칙 등을 정하여 게시 및 일상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</p> <p>중상. 내진인증제품 생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상관리를 하고 있으나 안전수칙 게시가 미흡한 경우</p> <p>중. 내진인증제품 생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운전 안전 수칙이 규정되어 있으나 안전수칙 게시 및 일상관리가 미흡한 경우</p> <p>중하. 내진인증 제품 생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안전 수칙 게시 및 일상관리가 미흡하고 운전 안전 수칙의 규정이 미흡한 경우</p>	<p>5</p> <p>4</p> <p>3</p> <p>2</p>	

구분	심사항목	세 부 심 사 내 용	배점	비고
		<p>(2) 설비의 운전과 관리에 대한 기준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설비별 운전 표준에 따라 설비를 적정하게 운전하고 있으며, 설비의 이력·제원, 수리 및 부품교환내역 등을 기록한 설비관리대장(또는 이력카드)을 관리하고 있는가?</p> <p>상. 설비의 운전과 관리에 대한 기준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설비별 운전표준에 따라 설비를 적정하게 운전하고 있으며, 설비의 이력·제원, 수리 및 부품교환내역 등을 기록한 설비관리대장(또는 이력카드)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</p> <p>중. 설비의 운전과 관리에 대한 기준이 사내표준에 규정되어 있으나 설비별 운전표준에 따라 설비를 적정하게 운전하고 있지 않거나, 설비관리대장(또는 이력카드)을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</p> <p>하. “중”에 미흡한 경우</p>	<p>3</p> <p>1</p> <p>0</p>	
		<p>(3) 설비의 예방보전을 위한 관리사항을 규정하고, 설비관리 능력 및 전문지식을 갖춘 자가 예방보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, 주기적으로 점검·기록·관리하고 있는가</p> <p>상. 설비의 원활한 운전을 위하여 각 설비별, 부위별로 적정 소모품, 교체부품 및 윤활유 등의 선택기준, 사용량, 교체주기, 폐품처리방법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으며, 설비 관리 능력 및 전문지식을 갖춘 자가 예방보전활동을 실시 및 주기적으로 점검·기록·관리하고 있는 경우</p> <p>중. “상”에 의한 기준의 설정은 되어 있으나 설비 관리 능력 및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 의한 주기적 점검·기록·관리가 미흡한 경우</p> <p>하. “중”에 미흡한 경우</p>	<p>4</p> <p>2</p> <p>0</p>	
6. 시험검사 설비관리	(1) 제품품질 항목에 대한 시험·검사가 가능한 설비를 보유하고, 사내표준(설비관리규정, 설비관리대장 등)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?	<p>* 외부기관(업체 포함)과의 사용계약 또는 공인시험·검사기관 시험성적서를 활용하는 설비에 대하여, 시험검사 의뢰 내용, 시험검사 주기 등 외부설비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의뢰하는 경우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봄</p> <p>상. 해당설비를 전량 보유한 하고, 사내표준을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</p> <p>중상. 해당설비를 전량 보유하고 있으나, 사내표준이 부분적으로 일부 미흡한 경우</p> <p>중. 해당설비를 전량 보유하고 있으나, 사내표준에 따른 기록이 전혀없는 경우</p> <p>중하. 해당설비를 전량 보유하고 있으나, 사내표준이 규정되어 있</p>	<p>4</p> <p>3</p> <p>2</p> <p>1</p>	

구분	심사항목	세 부 심 사 내 용	배점	비고
		<p>(2) 사내표준(시험·검사 대상설비, 교정 주기, 소급성 체계 등)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, 실행되고 있는가?</p> <p>* 교정주기는 통상 국가기술표준원 고시(KOLAS-G-008)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(이하 ‘치침’)에 따르는 것이 좋다. 만약, ‘치침’에 따른 교정주기 이상으로 관리하고자 자체적으로 교정주기를 정할 때에는 객관적인 측정표준 소급성 체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.</p> <p>상. 사내표준에 계측기 또는 표준물질의 사용빈도나 특성 등에 따라 회사실정에 맞는 교정주기를 정하고 교정기록 또는 표준물질 성적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, 교정성적서 및 인증성적서의 내용(불확도 또는 보정값)을 시험 결과의 측정에 반영하고 있는 경우</p> <p>중. 교정주기 등은 적정하게 규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교정기한이 지난 설비가 일부 있거나, 교정성적서 또는 표준물질 인증성적서의 활용 실적이 일부 미흡한 경우</p> <p>하. “중”에 미흡한 경우</p>	<p>4</p> <p>2</p> <p>0</p>	
		<p>(3) 시험·검사설비의 설치 장소, 환경이 적정하고, 성능유지를 위해 각 설비의 관리항목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,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·보관하여 설비관리에 활용하고 있는가?</p> <p>상. 시험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고, 성능유지를 위하여 각 시험검사설비의 점검항목·점검주기·점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험검사설비관리자가 그 관리규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며, 각 시험검사설비 관리대장을 비치하는 등 관리상태가 양호한 경우</p> <p>중. 시험검사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각 시험검사설비의 점검항목· 점검주기·점검방법 등을 규정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, 시험검사설비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으나 설치장소 및 점검기록관리가 일부 미흡한 경우</p> <p>하. “중”에 미흡한 경우</p>	<p>4</p> <p>2</p> <p>0</p>	